

第156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91年11月11日(月) 午後2時

議事日程(第13次本會議)

1.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
2.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警察共濟會法案
4. 大韓消防共濟會法案
5. 地籍法中改正法律案
6.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7. 射倂行爲等規制法中改正法律案
8.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
9.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
10.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1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1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附議된案件

- 休會의件(議長提議)1面
- 1.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金濟泰議員外 20人 發議)2面
- 2.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3面
- 3. 警察共濟會法案(金瑾洙議員外 25人 發議)3面
- 4. 大韓消防共濟會法案(康祐赫議員外 19人 發議)3面
- 5. 地籍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3面
- 6.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5面
- 7. 射倂行爲等規制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5面
- 8.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政府提出)6面
- 9.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7面
- 10.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7面
- 1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8面
- 1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8面
- 議事進行의件16面

(14時1分 開議)

○議長 朴浚圭 第1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
니다.

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
니다.

○議事局長 姜天求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2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各 黨 代表議員끼리 합의한 대로 休
會決議를 하고자 합니다.

92年度 豫算案審議를 비롯한 委員會活動을 위하여 11月12일부터 19일까지 8日間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합니다.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1.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金濟泰議員外 20人 發議)

(14時3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1項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을 上程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忠南 論山出身이신 金濟泰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濟泰議員 法制司法委員會所屬 金濟泰議員입니다.

저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한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그 審査한 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法律案은 이번 第156回 定期國會중인 지난 10月24日 金濟泰議員外 20人으로부터 發議되어 그 다음날에 同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먼저 이 法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憲法裁判所法 制定 당시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많은 審判事件이 請求되어 辯護士業에 종사하는 非常任裁判官으로서는 과중한 業務量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全員合議體인 裁判部가 常設적으로 召集되어 신속한 裁判이 進行되어야 하므로 非常任裁判官을 常任化하고 광범위한 裁判資料의 蒐集과 신중한 檢討가 요구되는 憲法裁判業務에 관하여 現行 憲法研究官만으로는 裁判官을 補佐하는데 미흡하므로 憲法研究官補制度를 新設하는 등 憲法裁判關聯制度를 合理的으로 개선하여 憲法裁判의 원활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國民의 基本權伸張과 國家發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主要骨子로서는

첫째로 常任裁判官이 아닌 裁判官 3人을 常任裁判官으로 함으로써 裁判官 9人을 모두 常任化하였고

둘째 憲法裁判所長이 행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를 憲法裁判所事務處長으로

하여 國會事務總長이나 法院行政處長의 예와 같이 均衡을 맞추었으며

셋째 1級 내지 3級상당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만 補할 수 있도록 한 憲法研究官을 4級 또는 4級상당의 憲法研究官補로도 둘 수 있도록 하여 憲法裁判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 관한 調査·研究業務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넷째 附則에서 行政審判法·豫算會計法 등 關聯法律을 改正하였습니다.

當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1991年11月8日 本 定期國會 第10次 委員會에 이 法律案을 上程하여 發議者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진지한 審査를 한 結果 일부 字句를 修正하여 議決하였습니다.

修正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第19條第3項에 新設되는 憲法研究官補의 任務를 憲法研究官의 任務와 同一한 것으로 規定하였고

둘째 常任裁判官의 경우 그 任命根據規定인 第13條가 削除되고 그 職名도 常任裁判官에서 裁判官으로 바뀌게 되므로 案 附則 第3條를 全文 修正하여 이 法 施行당시의 常任裁判官은 이 法에 의한 裁判官으로 任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經過措置 規定을 두었습니다.

이 法律案의 原案과 修正案의 內容에 대한 상세한 事項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法制司法委員會)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

(金濟泰議員外 20人)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朴浚圭 그러면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原案에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8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2項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上程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존경하는 洪世基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世基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洪世基議員입니다.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法案은 1991年10月7日 政府로부터 提出되어 다음날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된 改正法律案입니다.

이 法案의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を 간단히 말씀드리면 仁川地方法院 管轄區域인 富川市와 水原地方法院 管轄區域인 平澤市·松炭市·安城郡 및 平澤郡의 人口 및 事件件數가 增加하고 이들 地域과 仁川·水原間의 交通與件이 惡化됨을 감안해서 同 地域을 管轄하는 支院을 新設하고, 馬山地方法院이 1992年5月1日字로 昌原市로 移轉함에 따라 同法院의 名稱을 變更하며, 少年保護事件의 管轄을 一部 調整함으로써 住民의 편의와 法院間의 業務量 均衡을 圖謀하려는 것입니다.

그 主要骨子是

첫째 富川市를 管轄區域으로 하는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을 1995年3月1日字로 富川市에 新設하고, 平澤市·松炭市·安城郡 및 平澤郡을 管轄區域으로 하는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을 1996年3月1日字로 平澤市에 新設하고

둘째 馬山地方法院을 1992年5月1日字로 昌原地方法院으로 그 名稱을 變更하고

셋째 서울家庭法院에서 管轄하던 仁川地方法院·水原地方法院管内 少年保護事件과 釜山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서 管轄하던 昌原地方法院管内 少年保護事件을 各 해당 地域의 地方法院 本院에서 管轄하도록 하며

넷째 行政區域의 變更에 따라 各級 法院

의 所在地 및 管轄區域을 行政區域의 名稱과 同一하게 調整하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이 法案을 1991年10月30日 第156回國會 第8次 委員會에 上程하여 政府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음 法案審査小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서 第9次·10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충분한 討議와 審査를 마친 다음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상세한 內容은 이미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해 주시고 저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議決한대로 同 本會議에서도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法制司法委員會)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政 府)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朴浚圭 그러면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3. 警察共濟會法案(金瑾洙議員外 25人 發議)

4. 大韓消防共濟會法案(康祐赫議員外 19人 發議)

5. 地籍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13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3項 警察共濟會法案과 議事日程 第4項 大韓消防共濟會法案 그리고 議事日程 第5項 地籍法中改正法律案 이상 세 件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內務委員會의 仁川 南洞區出身 康祐赫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康祐赫議員 內務委員會 康祐赫議員입니다.

警察共濟會法案 大韓消防共濟會法案 地籍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朴浚圭議長, 金在光副議長과 司會交代)

먼저 警察共濟會法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말씀드리면 이 法案은 警察公務員들이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目的으로 設立·運營하고 있는 警察共濟會가 8萬餘名の 會員과 480餘億원의 많은 基金을 확보한 大規模 共濟會로 發展함에 따라 民法上の 財團法人으로서 는 효율적인 共濟事業을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他 公務員共濟會와 같이 特別法人으로서 건전하게 成長할 수 있도록 法的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金瑾洙議員外 25인이 發議한 制定法案입니다.

그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警察共濟會는 效率的인 共濟制度를 통하여 警察公務員에 대한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였고

둘째 共濟會의 會員은 警察公務員法에 의한 警察公務員과 共濟會의 任·職員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共濟會는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를 두고, 執行 및 監查機關으로서 理事長과 理事 및 監查를 두도록 하였고

넷째 定款의 變更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警察廳長의 認可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理事長·理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하되 警察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豫算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警察廳長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共濟會는 會員에 대한 給與의 支給과 會員을 위한 福祉厚生施設의 設置·運營 및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民法上の 財團法人인 現存 共濟會를 이 法에 의한 共濟會로 보도록 한 內容입니다.

다음 大韓消防共濟會法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말씀드리면

이 法案은 消防公務員들이 相扶相助를 위해 1984년에 設立·運營하고 있는 大韓消防共濟會가 그동안 꾸준히 成長해서 1萬3,000餘名の 會員과 350億원이 넘는 基金을 확보한 大規模 共濟會로 發展함에 따라 民法上の 社團法人으로서 는 共濟事業 運營上 여

러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他 公務員共濟會와 같이 特別法人으로서 健全하게 成長할 수 있도록 法的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本議員外 19인이 發議한 制定法案입니다.

그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現存 大韓消防共濟會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한 共濟會로 보도록 하였고

둘째 共濟會의 會員은 消防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公務員과 共濟會의 任職員으로 하였으며

셋째 共濟會는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를 두고, 執行 및 監查機關으로서 理事長과 理事 및 監查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其他條項은 앞서 말씀드린 警察共濟會法案과 大同小異하므로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件的 法案을 當 委員會에서는 第156回國會 第8次 內務委員會에 上程하여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答辯을 한 다음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審査한 後 第9次 內務委員會에서 與野 委員님들이 異議없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그리고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를 거쳐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地籍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말씀드리면 이 法律案은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을 臺帳과 電算登錄화일에 2重으로 整理하던 것을 電算登錄화일에만 整理할 수 있도록 하고, 地目중 運動場을 體育用地로 名稱變更을 하기 위하여 政府로부터 提出된 改正法律案입니다.

이 法律案을 當 委員會에서는 第156回國會 第8次 內務委員會에 上程하여 政府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答辯을 한 다음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審査한 結果 그 內容에 대하여는 달리 異見이 없었으며 一部條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습니다.

첫째 運動場을 體育用地로 地目の 名稱을 變更함에 따라 管轄登記所에 土地表示變更에 관한 登記를 囑託하여야 되는 期間을 大統領令에 委任하고 있는 것을 이 法 施行日 부터 3年の 범위 안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들께 邑·面事務所에서는 電算登錄 화일화 된 土地臺帳과 林野臺帳에 의해서 그 副本 들을 備置·整理하도록 明確히 規定한 것입 니다.

이상 報告드린 바와같이 이 法律案을 第 156回國會 第9次 內務委員會에서 修正議決하 였습니다.

그리고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를 거쳐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詳細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 告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드린 대로 審議·議決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警察共濟會法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警察共濟會法案 (金瑾洙議員外 25人)

大韓消防共濟會法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大韓消防共濟會法案 (康祐赫議員外 19人)

地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地籍法中改正法律案 (政府)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在光 그러면 먼저 警察共濟會法 案에 대해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 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大韓消防共濟會法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地籍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內務委 員會에서 修正한 부분과 其他部分의 原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7. 射倂行爲 등 規制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22分)

○副議長 金在光 議事日程 第6項 警察公務 員法中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7項 射倂行 爲 등 規制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을 일괄하 여 上程하겠습니다.

內務委員會의 忠南 舒川出身 李肯珪議員 2件에 대해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肯珪議員 內務委員會 李肯珪議員입니다.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射倂行爲 등 規制法 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審 査結果를 말씀드리면 이 法律案은 警監이하 警察公務員의 年齡停年을 延長하고 기타 일 부 未備點을 補完하고자 政府로부터 提出된 改正法律案입니다.

그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警査이하의 年齡停年을 55세에서 58 세로 延長하되 停年延長에 따른 人事적체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段階의 으 施行하도록 하고,

둘째 警監·警衛의 年齡停年과 警査이하로 서 企劃·監査 등 內勤部署에서 10年以上 근 무한 者의 年齡停年을 3년의 범위안에서 延長할 수 있도록 하되 停年延長에 따른 人事적체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3년에 걸 쳐 段階의 으 시행하도록 한 內容입니다.

이 法律案을 當 委員會에서는 第156回國會 第8次 內務委員會에 上程하여 政府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 음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審査한 結果 6級 이하 一般職公務員의 停年을 3년의 범위안 에서 延長할 수 있도록 한 國家公務員法의 立法趣旨와 그간에 國民의 평균수명 延長으 로 職務遂行을 위한 身體·精神上的 限界年 齡이 크게 늘어난 社會全般의 고령화 추세 에 비추어 볼 때 그 妥當성이 인정되어 第156回國會 第9次 內務委員會에서 政府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 射倂行爲 등 規制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말씀드리면 이 法律案은 警察法 의 制定·施行에 따라 射倂行爲 關聯業務를

행할 行政機關을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서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으로 變更하고자 政府가 提出한 改正法律案입니다.

이 法律案을 當 委員會에서는 第156回 國會 第8次 內務委員會에 上程하여 政府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음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審査한 結果 警察法의 制定에 따라 法體系를 整理하는 것으로서 그 內容에 대하여는 달리 問題가 없었으나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의 效力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經過規定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行爲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한다는 內容입니다.

이상 報告드린 바와 같이 이 法律案을 第156回 國會 第9次 內務委員會에서 修正議決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件의 法律案에 대하여는 法制司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를 거쳐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詳細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射倂行爲等規制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射倂行爲等規制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在光 그러면 먼저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射倂行爲等規制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 內務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原案에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政府提出)

(14時28分)

○副議長 金在光 議事日程 第8項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을 上程합니다.

文化公報委員會의 黃大鳳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大鳳議員 文化公報委員會 黃大鳳議員입니다.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에 대해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法案은 1991年9月14日 政府가 提出한 法案으로서 먼저 그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博物館 및 美術館의 登錄要件을 緩和하여 博物館 및 美術館의 登錄을 誘導하고 博物館 및 美術館에 대한 支援制度를 強化하여 그 設立을 촉진하며 기타 制度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未備點을 전면 補完함으로써 博物館 및 美術館의 機能을 보다 活性化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主要骨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博物館 및 美術館의 種類를 運營主體에 따라 國立·公立 및 私立博物館으로 取扱資料의 범위에 따라 綜合博物館과 專門博物館으로 구분하고

둘째 科學·技術專門博物館 및 教育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 學校에 設置·운영하는 博物館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博物館 및 美術館은 필요한 專門職員과 資料 및 施設을 갖추어 명칭·所在地·資料目錄 등을 登錄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私立博物館 및 私立美術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文化部長官으로부터 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都市計劃法·道路法·水道法·下水道法·農地의 保全및利用에 관한

法律·農地擴大開發促進法·土地區劃整理事業法 등에 의한 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하되 文化部長官은 承認전에 미리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文化公報委員會에서는 1991年10月30日 第9次 委員會에 同 法案을 上程하여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듣고 진지하게 審査한 結果 一部條項을 修正하여 議決하였습니다.

그 主要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博物館에서 蒐集·保存·展示하는 資料중에 美術에 관한 資料를 除外하도록 規定되어 있는 政府原案에 대하여 博物館資料에도 古美術品등 美術에 관한 資料가 포함되도록 修正하고 美術館에 대한 概念定義도 이를 博物館의 種概念으로 하여 博物館의 一種으로 明示하고 또한 美術館資料에 建築·寫眞을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약간의 字句修正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 審査를 거쳐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 審査報告書
(文化公報委員會)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
(政 府)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在光 그러면 第8項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에 대하여 文化公報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原案에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0.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33分)

○副議長 金在光 議事日程 第9項 大韓石炭

公社法中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10項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을 一括하여 上程하겠습니다.

動力資源委員會의 江原道 太白出身 柳昇珪 議員 2件에 대해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昇珪議員 動力資源委員會의 柳昇珪議員입니다.

지금부터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과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法律案은 1991年9月27日 政府로부터 提出되어 同年9月30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同 改正法律案의 提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無煙炭의 價格競争力의 약화와 煉炭의 需要減少로 다수의 民營炭鑛이 廢鑛됨에 따라 大韓石炭公社의 역할이 점차 增大하고 있으나 炭鑛開發 與件의 惡化와 人力不足등 經營與件이 惡化되고 있으므로 石炭需給의 安定 및 賦存資源의 활용을 위해 經濟性이 있는 炭鑛을 중심으로 開發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所要되는 投資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大韓石炭公社의 資本金을 현재 1,500億원에서 4,500億원으로 增額하려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1991年10月31日 第156回 定期國會 第7次 委員會에 上程하여 政府側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答辯을 거쳐 常設 第1小委員會에 回附 하였습니다.

同年11月1日 第8次 委員會에서 小委員會의 審査報告를 듣고 앞으로 大韓石炭公社의 역할, 所要資金의 調達計劃, 經營環境 등을 감안할 때 大韓石炭公社의 資本金을 1,500億원에서 4,500億원으로 增額하는 것은 그 妥當性이 있다고 인정하여 政府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法律案은 1991年10月4日 政府로부터

터 提出되어 同年10月7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同 改正法律案의 提案理由는 液化石油가스 消費가 急增하고 용도가 다양화되어 가스事故가 增加됨에 따라 液化石油가스事業에 대한 安全管理制度를 改善하여 各種 危害를 豫防하는 한편 現行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입니다.

그 主要骨子는

첫째 液化石油가스의 供給中斷으로 인한 國民生活의 불편을 解消하기 위하여 事業者 등에 대한 事業停止處분에 갈음하여 課徵金 賦課處分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가스보일러 등 가스使用施設의 不實 施工으로 인한 事故의 豫防을 위하여 無資格者의 施工을 禁止하고 그 違反行爲를 處罰對象으로 추가하며,

셋째 液化石油가스事業의 건전한 育成 등을 위하여 事業別로 事業者團體를 設립할 수 있게 하고 同 事業者團體로 하여금 가스事故로 인한 損害의 補償 등을 위한 共濟事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가스安全技術의 開發, 教育·弘報 등 安全管理事業의 遂行에 소요되는 基金의 財源을 安定的으로 調達하기 위하여 基金의 造成期限을 1991年12月31日에서 1996年12月31日까지 5年間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1991年10月31日 第156回定期國會 第7次 委員會에 上程하여 政府側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答辯을 거쳐 심도있는 審査를 위해 第1常設小委員會에 回附하였습니다.

同年11月1日 第8次 委員會에서 小委員會의 審査報告를 듣고 修正議決하였습니다.

修正한 主要骨子는 改正法律案에서 과징금 賦課處分對象을 가스充塲事業者와 가스集團供給事業者에게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法適用의 衡平에 맞지 않으므로 과징금 賦課對象을 모든 事業者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一部條文의 體系 및 字句를 修正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2件의 法律案에 대해서는 11月8日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를 거쳐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

고하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動力資源委員會)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動力資源委員會)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在光 그러면 먼저 第9項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여러 議員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第10項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動力資源委員會에서 修正한 部分과 其他部分의 原案에 대하여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1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14時42分)

○副議長 金在光 議事日程 第11項 1990年度歲入歲出決算과 議事日程 第12項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이상 2件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江原道 東海出身 洪熙杓議員 2件에 대하여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熙杓議員 豫算決算委員會의 洪熙杓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政府가 提出한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審査經過를 말씀드리면 1990年度 歲入 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은 지난 9월 2日 政府로부터 提出되어 所管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를 거쳐 11月4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11月6日 第156回 國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1990年度 歲入 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을 一括上程하여 財務部長官의 提案說明과 監査院長의 決算檢討報告 그리고 監査院의 決算檢查報告에 대한 執行現況을 들은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이어 政策質疑를 통하여 歲入歲出決算의 內容과 豫備費의 支出 등 1990年度 財政運用的 實態를 비롯하여 經濟成長의 內容, 物價, 國際收支 등 經濟運用的 全般과 輸入開放, 環境, 民生治安 등 當面한 懸案問題에 관하여 진지하게 深度있는 審査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案件의 審議過程에서 '90年度 稅收推計와 歲計剩餘金에 의한 追更編成, 豫備費支出의 內容과 節次 및 豫算의 目的外 使用 등 '90年度の 財政運用結果에 대한 異見으로 1991年11月9日 第156回國會 第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하여 質反討論과 表決을 거쳐 各各 政府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政府가 國會에 提出한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年度 一般會計의 歲入決算額은 31兆3,046億 원, 歲出決算額은 27兆4,368億 원으로서 3兆8,678億 원의 歲計剩餘金이 發生하여 이중 6,999億 원은 91年度로 移越되고 나머지는 純剩餘金 3兆1,679億 원 중 3,532億 원은 債務償還에 2兆8,147億 원은 '91年度 第1回 및 第2回 追更財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歲入歲出決算의 內容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歲入에 있어서는 內國稅 19兆1,302億 원, 關稅 2兆7,654億 원, 防衛稅 4兆4,306億 원, 教育稅 5,213億 원과 稅外收入 4兆4,571億 원이 各各 收納되었으며 歲出에 있어서는 一般行政費 2兆8,018億 원, 防衛費 6兆8,562億 원, 教育費 5兆5,860億 원, 社會開發費 2兆4,503億 원, 經濟開發費 3兆8,678億 원, 地方財政交付金 2

兆7,647億 원과 債務償還 및 其他에 3兆1,100億 원을 各各 執行하였습니다.

그리고 財政投融资特別會計를 비롯한 18個 特別會計의 歲入決算額은 11兆8,303億 원, 歲出決算額은 11兆461億 원으로서 7,842億 원의 歲計剩餘金이 發生하여 이중 7,121億 원은 '91年度로 移越되고 나머지 純剩餘金 721億 원은 다음年度 歲入에 移入하거나 關聯基金에 積立하였습니다.

둘째 繼續費에 있어서는 1990年度 終了되는 事業은 甘川港建設事業으로 總豫算額 335億 원 중 321億 원이 支出되고 11億 원은 不用處理되었습니다.

셋째 政府管理基金에 있어서는 企業會計方式에 의한 21個 基金의 1990年度末 現在 財產狀態는 資產 25兆9,186億 원, 負債 20兆3,736億 원, 資本이 5兆5,450億 원이며 損益狀況은 總收益 7兆2,437億 원, 總費用 6兆7,234億 원으로 5,203億 원의 當期純利益이 發生하였으며 現金會計方式에 의한 12個 基金의 總收入은 4,446億 원, 總支出은 4,322億 원으로 124億 원의 剩餘金이 發生하였습니다.

넷째 國家債權에 있어서는 1989年末보다 5兆150億 원이 增加된 25兆1,943億 원이며

다섯째 國家債務는 前年度末보다 4兆4,123億 원이 增加한 31兆7,333億 원으로서 이중 政府保證債務 7兆1,881億 원을 除外한 純國家債務는 前年度보다 3兆4,521億 원이 增加한 24兆5,452億 원입니다.

여섯째 1990年度末 現在 國有財產總額은 前年度末보다 26兆1,762億 원이 增加한 55兆7,596億 원이며

끝으로 物品은 前年度末보다 14.1%가 增加한 1兆2,902億 원입니다.

다음은 監査院의 決算檢查結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憲法 第97條 및 監査院法 第21條,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을 確認한 結果 一般會計 및 18個 特別會計의 歲入決算額은 43兆1,349億 원, 歲出決算額은 38兆4,829億 원으로서 4兆6,520億 원의 歲計剩餘金이 發生하였으며 이는 韓國銀行이 提出한 國庫金出納計算書上의 金額과 一致하였습니다.

그리고 監査結果 違法·不當하거나 不合理

하다고 認定되어 措置한 것은 總 4,326件에 1,681億2,069萬원으로서 追加徵收 또는 回收 補填要求金額 1,238億7,221萬원, 還給 또는 追加支給要求金額 13億5,472萬원, 豫算節減 또는 國民負擔輕減要求金額 428億9,376萬원이 며 懲戒·問責要求나 告發한 人員은 967名 입니다.

그리고 1991年9月30日 現在 國家機關에 대하여 本年度中 處分을 요구한 事項 1,457件과 前年度 決算檢査報告書에서 未執行事項으로 報告된 336件을 합한 1,793件中 1,667件은 執行되고 나머지 126件은 執行中에 있습니다.

다음은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을 眞摯하게 審査한 후 與野合意로 處理하려고 努力하였습니다. 마는 '90年度 財政運用結果에 대하여 民主自由黨에서는 '90年度의 財政運用은 社會間接資本擴充 등 財政機能을 正常化하는 過程에서 不可避하게 綜合財政收支가 赤字를 記錄하였으나 '90年度 豫算을 대체로 踉蹌없이 執行하였다고 보는 反面 民主黨에서는 '90年度 豫算은 違法·不當하게 執行된 點 그리고 審議節次에 있어서 憲法과 國會法에 出席義務가 있는 國務總理, 國家安全企劃部長, 靑瓦臺 秘書室長 등이 不出席한 點과 豫算制度의 올바른 執行, 民主主義的인 節次와 法治主義의 節次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國會의 適法한 運營의 傳統을 새로 樹立하는 契機를 만들기 위하여 反對하는 등 交涉團體間의 異見으로 質反討論을 거쳐 表決한 바 在席 44人中 贊成 30人, 反對 14人으로 政府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이어서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政府가 提出한 1990年度 豫備費支出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一般會計의 豫備費 豫算額은 5,440億원, 支出決定額은 5,199億원이나 實際支出한 金額은 4,885億원으로서 그 主要內容은 俸給 및 公共料金 不足額 5億원, 災害對策費 1,696億원, 給糧費 不足額 31億원, 事前調査費 3億원 그리고 一般經費 3,150億원입니다. 한편 13個 特別會計

의 豫備費 豫算額은 442億원이었으나 이중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 등 2個 特別會計에서 273億원을 支出하였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을 眞摯하게 審査한 後 歲入歲出決算과 함께 質反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 44人中 贊成 30人, 反對 14人으로 政府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年度歲入歲出決算과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오니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在光 이 案件에 대해서는 討論申請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反對의 立場에 계신 民主黨의 釜山 東區出身 盧武鉉議員께서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議員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90年度 決算報告와 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한 反對討論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討論의 內容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으로서 審査에 참여하면서 대단히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수치감같은 것도 느끼면서 審議에 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오늘 反對討論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시 豫算制度라는 것이 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은 政府의 歲入과 歲出을 適法하게 집행하고 그 內容이 國家의 目的에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따지고 또 그것이 오늘의 經濟的 狀況에 있어서 가장 效率的인가

아닌가를 檢査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政治를 하는 분들은 一般的으로 豫算을 審議할 때에 있어서는 效率性의 문제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適法性 部分은 좀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法治主義의 경험은 適法性이 확보되지 않은 豫算과 決算에 있어서 決算이 궁극적으로 效率이 담보될 수 없다 라는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豫算의 效率性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먼저 적법하게 編成되고 執行되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90年度の 歲入歲出의 決算과 豫備費支出의 適法性에 관해서 심도있게 審議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審議過程에서 效率性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한 낭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오늘의 討論에서는 適法性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번 90年の 決算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豫算은 여러가지 違法한 節次에 의해서 編成되고 執行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憲法에 違反된 法律에 의해서 豫算의 編成과 執行이 잘못되고 豫算制度의 效用性을 상실시키는 豫算制度의 의미, 豫算制度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고 國會의 豫算審議權까지 배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安全企劃部法 그리고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등에 의해서 安企部가 사용하는 豫算은 모두 總額으로만 報告하게 되어 있고 또 總額만 보고 監査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의 어떤 規定을 아무리 살펴봐도 國會가 가진 豫算에 대한 審議權을 法律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根據規定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法律은 國會가 가진 고유한 權限인 豫算審議權을 배제한 違憲의 法律인 것입니다.

歷史적으로 이 特例法은 1963年 5·16이 후에 만들어진 法이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違憲의 法律에 의해서 편성되고 違憲의 法律에 의해서 國會의 豫算審議權이 배제된 90年度 決算은 違法입니다.

두번째는 法의 不法인 확대적용에 의해서 또한 豫算의 審議權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했던 安全企劃部法과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이 違憲의 法律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違憲의 法律마저 그 條項의 해석이 法의 字句대로 또 애당초 立法趣旨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恣意的으로 擴大解釋되어서 그 法에 規定된 豫算의 編成權 審議權마저 無用之物이 되어있다. 90年度 豫算을 보면 安全企劃部는 本豫算 安全企劃部 豫算으로써 164億원을 編成해서 執行했고 豫備費에서 2,612億원을 經濟企劃院豫算의 이름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本豫算의 무려 15배에 가까운 엄청난 金額입니다.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에 의하면 安全企劃部가 사용하는 豫備費는 總額으로 報告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는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法이 있다고 해서 豫備費가 豫備費 아닌 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本豫算은 本豫算이고 豫備費는 豫備費인 것입니다. 豫備費는 본시 예측할 수 없는 豫算上의 支出 또는 예측할 수 없는 超過支出에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安全企劃部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機關이길래 예측할 수 있는 豫算은 164億에 불과하고 2,612億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예측할 수 없는 費用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國家機關이 자기의 고유의 권한에 따른 職務에 따른 業務를 10分の 1밖에 예측하지 못하는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豫算會計 特例法의 規定을 擴大適用해 가지고 豫備費를 함부로 쓴

다는 것은 豫算의 編成制度 豫算制度和 國會의 豫算審議權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잘못된 法適用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違法인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決算을 報告함에 있어서 전혀 內譯이 없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違法입니다.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을 보면 國家安保에 관한 豫算은 內譯과 資料없이 審査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이 豫算審議過程中에서 政府에 質問을 했습니다.

安全企劃部 이외의 다른 行政各部에 國家安保를 위한 豫算이 編成된 것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副總理는 명백히 그런 豫算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務部の 政務活動特殊事業費 78億 勞動部の 勞政事業推進情報費 2億9,000萬원 등 몇개의 部署에 전혀 使用內譯이 밝혀져 있지 않고 支出明細書도 밝혀져 있지 않는 豫算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豫算들이야말로 89年 또 決算過程中에서 89年 그 이전의 決算過程中에서 安全企劃部가 자기의 豫算을 各 行政部署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副總理께서 다른 行政各部에는 安全企劃部の 豫算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國家安保의 豫算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費目들은 반드시 그 內譯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內譯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內譯이 없이 이 엄청난 돈의 決算을 要求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違法인 것입니다.

다음은 본시 豫備費로써 써서 안될 支出을 本豫算에 編成하지 아니하고 每年 반복해서 豫備費에서 끌어다 쓴 또한 違法한 豫算의 編成과 執行이 있었습니다.

89年 決算審議時 國會 豫決委의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를 보면 行政各部에서 본시 그 行政機關의 當연한 業務이므로 本豫算에 編成해서 사용해야 될 豫算을 本豫算에 編成하지 아니하고 豫備費에서 함부로

支出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 項目들을 살펴보면 類廢業所 團束經費, 不動產投機事犯의 搜查經費, 消費健全化運動推進經費 등 여러가지 項目이 있었습니다.

90年度에... 89년에 그와같은 지적이 있었으면 90年 豫算의 編成과 執行에서는 이것을 다시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年 決算 또한 決算報告書를 보면 역시 이와 같은 項目의 支出들이 전부 豫備費에서 支出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具體的으로 豫備費에 관한 한 두개의 명백한 違法을 지적했을 뿐이고 一般的으로 豫備費가 대단히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豫備費審議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느낌이 이 豫備費는 힘 좋은 各機關이 자기 私金庫, 자기 호주머니 돈 끌어내다 쓰듯이 입대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 부풀려서 만들어 놓은 豫備費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產特會計의 豫算에 있어서의 編成과 執行에 또한 違法이 있습니다.

產特會計豫算의 支出項目을 보면 廳舍建立費와 勤勞監督官의 情報費 什器購入費 등 保險과 관련된 費用이 아닌 一般行政經費가 特別會計에서 支出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88년에 이미 그 不當性이 國會에서 지적되어서 89年4月1일에 產災保險法을 改正해서 同法 第2條의2에서는 이와 같은 執行에 드는 費用 뿐만 아니라 產特會計의 固有의 一般行政經費까지도 一般會計에서 負擔하도록 法을 改正했습니다. 그러면 產特會計에서 一般會計 經費를 支出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產特會計 그 자체의 行政經費도 一般會計에서 補塡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0年 決算을 보면 產特會計에서 이와 같은 一般會計에서 支出하여야 할 經費들을 여전히 支出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本議員만의 지적만이 아니고 90年 監査院 監査報告書에서도 명백히 違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政府에서는 一般會計에서 產特會計에 상당한 金額을 전입시켜서 補塡을 해 주고 있습니다. 89年 10億이던 것을, 一般會計의 轉入이 10億이던 것이 90년에는 70億이고 91년에는 89億, 92년에는 100億으로 이렇게

增額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一般會計에서 產特으로 補填해 주는 돈은 改正된 法 第2條의2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는 따로 產特에서 支出할 수 없는 項目을 支出한 것은 여전히 違法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政府가 國會에 대한 約束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政府가 國會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하거나 國政監査 또는 豫算審議過程에서 잘못이 지적되고 그 是正을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9年 國政監査때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의 事務室 59%에 해당하는 169個가 國家·地方自治團體의 事務室을 無償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內務部長官은 自體 事務室을 확보하거나 또는 有償으로 使用하도록 段階別로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꼭 1年 뒤인 90年の 國政監査報告書에 의하면 단 1個의 事務室도 달리 措置된 일이 없이 여전히 無償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與黨一角에서 이 團體를 支援·育成하는 法을 制定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法이 通過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法이 通過되기 전까지는 約束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政府는 約束을 違反했습니다.

이 점은 92年 豫算의 編成에 있어서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것입니다.

政府 스스로 豫算編成基準을 違反한 違法이 있습니다. 每年 經濟企劃院은 스스로 豫算編成基準을 마련해서 各 部處에 이를 下達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要求하고 있습니다.

90年の 豫算編成基準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民間에 대한 新規補助는 原則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既存 補助金은 年次別로 縮小 計劃을 첨부해서 豫算을 要求하도록 豫算準則에 定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9年 補助金執行은 303億인데 90年 補助金執行額은 354億원으로 17%가 增額되었고 그 이후 豫算編成을 보아도 전부 增額되고 있습니다. 經濟企劃院 스스로 經濟·財政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準則을 定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

다.

이상으로는 豫算의 違法한 編成과 執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豫算의 浪費部分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90年10月13日 盧大統領이 犯罪와의 戰爭을 宣布한 다음에 이 宣言에 따른 事業이 推進되면서 여기에 새秩序新生活運動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各 部處의 補助金 14億5,000萬원, 豫備費 66億1,000萬원 등 總 80億6,000萬원이 새秩序新生活運動에 執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年 國政監査時에 提出된 內務部의 資料를 보면 그해末까지 한두 달동안의 期間에 이 運動에 延 18萬個의 團體가 참여했고 延 2,432萬3,000名의 人員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資料에 의하면 하루 3,000個 團體, 사람 數로는 하루 40萬名이 매일 쉬지를 않고 이 運動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플랑카드 걸어 놓고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 보는 것도 運動의 참여인지 텔레비전에서 이 廣告를 한번 쳐다보면, 캠페인을 한번 쳐다 보면 그것이 참여가 된다면 이 數字도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피켓 하나라도 들고 조그마한 어깨띠 하나라도 들고 나와서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루에 40萬名씩 60日동안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運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돈이 정말 잘 쓰여진 것인가? 80億입니다. 90年 缺食兒童 1萬100名에 대한 給食費가 18億원입니다. 示範託兒所 建立에 10億원, 中小企業 技術開發事業에 들인 돈이 58億원입니다. 工團廢水處理施設을 위해서 編成된 豫算이 59億원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事業에 編成된 豫算이 불과 이런 少額임에 비해서 어깨띠 두르고 피켓 들고 전단 들고 나와서 示威하는 일에 80億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大統領의 宣言만 있으면 으레 행해지는 浪費, 展示行政의 標本的인 事例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本議員은 우리 大統領께서 무슨 宣言 또 하실까봐 좀 겁이 납니다.

다음에는 追更豫算에 관한 不當性입니다.

90年度에는 두번에 걸쳐서 4兆7,663億원이

라는 追更이 編成되었습니다. 이것은 本豫算 對比 21%나 增加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豫算歷史에서 初有의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본다 할지라도 政府의 財政·經濟運用과 豫測能力에 대한 限界를, 水準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追更을 이렇게 編成한다고 해서야 豫算制度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豫算制度의 目的 自體를 存在意義 自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追更이 編成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90年1月の 3黨合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追更이야말로 바로 豫算制度의 機能과 存在意義를 무색케 하는 事實상의 脫法行爲입니다.

다음 監査院의 監査가 결여된 決算報告의 違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靑瓦臺에 대해서 監査院은 한번도 實地監査를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書面監査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書類만 提出받았을 뿐 한번도 監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0年度에만 監査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번도 靑瓦臺에 대해서는 實地監査를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安全企劃部와 保安司令部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靑瓦臺와 安全企劃部와 保安司에 대해서는 監査院이 監査를 하지 말라는 어떤 法的 根據도 없습니다. 오히려 明示의으로 國務總理가 疏明하는 國家機密 등 몇가지의 예외 이외에는 監査를 하도록 監査院法에 明示의으로 規定되어 있습니다.

왜 實地監査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監査를 하지 않고 國會에다가 監査報告書를 提出하는 것은 適法한 監査報告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年の 豫算은 憲法과 法律을 違反해서 執行되었고 또는 立法의 취지에 背馳되게 또는 意圖的으로 立法의 未備點을 惡用해서 不法하게 執行된 豫算입니다. 뿐만 아니라 無原則한 豫算의 執行에 의해서 엄청난 國庫가 浪費되었습니다. 그 위에 決算節次에 있어서 憲法과 國會法에 의하면 國家安全企劃部長, 靑瓦臺秘書室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義務가

있습니다. 물론 國務總理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豫算決算小委의 審議過程에서 國務總理와 國家安全企劃部長 그리고 靑瓦臺 秘書室長은 出席하지 않았습니다.

交涉團體인 民主黨所屬 議員들의 강력한 出席要求에도 불구하고 出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不誠實한 態度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出席하여서 報告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豫算審議權이 制約을 받은 것입니다.

豫算의 내용과 節次에 대한 이상 지적한 內容上的 不法과 審査節次에 있어서의 違法事實은 바로 國務委員에 대해서는 解任을 建議할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면 彈劾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 나오셨습니까?

決算의 내용과 節次에 대한 이런 문제提起는 단순한 政治的 攻勢거나 또는 問題提起를 위한 問題提起가 아니라 적어도 國民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豫算 그리고 決算 그리고 國會의 고유한 權限의 행사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층정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같은 잘못된 豫算의 運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어느 것이 效率的이다 이쪽 길이 더 빠르다 저쪽 길이 더 빠르다 이런 문제라면 與野가 나는 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豫算이 違法하게 집행됨으로 해서 우리 國會의 기능이 제약을 받았거나 결과적으로 合法的인 國家의 行政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서 國民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與野없이 이것을 바로 잡는데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交涉團體所屬 議員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다른 것은 다 與野가 따로 하더라도 不法한 것을 바로 잡는 것만은 與野가 함께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在光 다음은 贊成입장에 제시 民主自由黨의 金洪萬議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萬議員 民主自由黨 金洪萬議員입니다.

본인이 오늘 尊敬하는 與野 先輩·同僚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199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經濟는 걸프사태의 충격등 급변하는 內外經濟 與件속에서 89年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國際收支, 物價面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成長面에서는 9.0%의 높은 實質成長을 이룩하였으나 國際收支面에서는 22億달러의 經常收支 赤字를 기록하였으며 物價面에서도 都賣物價는 前年對比 7.4% 消費者物價는 前年對比 9.4%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經濟가 사련을 겪은 것은 民主化過程에서 서로 자기의 몫을 차지 하려고 각계의 이해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經濟主體들의 經濟하려는 의지가 저하되고 경제사정이 좋았던 지난 몇 年동안 政府의 財政運用에 있어서 經濟安定化 機能이 크게 강조된 결과 社會間接資本部門 등에서의 투자가 위축되어 供給側面에서의 애로를 초래한데 그 주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政府는 '90年度 財政運用에 있어 社會間接資本 擴充을 통하여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製造業部門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 습니다.

'90年度 綜合財政收支가 赤字를 나타낸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소홀히 하여왔던 財政機能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政府가 '90년에 편성된 豫算을 대체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고 本人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決算審議過程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本人의 견해를 말씀드리므로써 '90年度 決算 및 豫備費 사용을 접수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稅收推計의 부정확으로 인해 '90年度에 3兆원 이상의 과다한 歲計剩餘金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豫決委 審議過程에서 여러 同僚議員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디만 이

는 稅收推計의 기본전제가 되는 經濟成長率이 당초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政府는 보다 정확한 經濟展望值의 豫測能力 확충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綜合財政收支 赤字論議에 대한 本人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數年間 緊縮財政의 지속과정에서 나타난 社會間接資本部門 등 각 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財政機能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財政收支 赤字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綜合財政收支의 赤字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 통화는 1兆5,000億원 정도가 환수되어 전체적인 通貨管理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國家安全保障 활동을 위한 豫備費 支出額이 增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豫備費가 당초 취지대로 예측할 수 없는 經費에 支出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90年度에 豫備費中 일부 經費가 반복되고 또한 安全保障活動을 위한 豫備費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전에 그 支出所要와 經費內譯이 未確定狀態에 있어 당초 豫算上에 그 所要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基金制度의 效率的 運用을 위해 基金運用制度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本議員도 그동안 基金이 다소 방만하게 運用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政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類似基金의 統廢合施策을 추진하는 등 基金制度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行政府는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監査院의 決算檢査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물론 議員 여러분께서 豫決委員會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制度改善을 포함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與野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아직도 우리 經濟의 전망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수많은 난관으로 인하여 결코 밝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對外的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은 날로 높아져 가고 後發開途國의 추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내년에 여러차례 選舉를 앞두고 있어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이 될 많은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약화된 國內産業의 경쟁력을 되살려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汎世界的인 개방화 국제화의 추세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與野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와같이 우리 經濟가 어려운 시점에서 90年度 決算이 만약 접수되지 않는다면 本人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로 인한 政府豫算 집행상의 혼란발생으로 國家財政運用에 크나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여러 議員님께서 '90年度 決算 및 豫備費支出을 滿場一致로 접수하고 承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各 常任委에서 本件이 滿場一致로 통과되어 왔음을 부연하면서 本議員의 贊成發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在光 그러면 討論을 종결하고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이 案件에 대해서는 각각 表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제신 議員 여러분께서는 會議場으로 오셔서 表決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 229人 중 可 170人, 否 57人, 棄權

2人으로써 國會法 第109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시는 분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 229人 중 可 170人, 否 57人, 棄權 2人으로써 國會法 第109條의 規定에 의해서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議事進行의 件

(15時35分)

○副議長 金在光 마지막으로 議事進行發言 申請이 있으므로 民主黨의 張石和議員 나오셔서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議員 民主黨의 張石和議員입니다.

議事進行發言이기 때문에 잠시면 됩니다. 여러 존경하옵는 議員님들께서 잠시동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지난번 10月10日 本會議 對政府 質問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와야 될 會議錄이 그후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本議員의 所見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議長에 대해서 公式의으로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國會法과 國會會議錄 發刊 또 配付規定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會議錄은 그 다음날 會議時까지 그러니까 10月11日까지 여러 議員님들 앞에 配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配付되지 않고 또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사 및 열람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議長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議長은 本議員을 불러서 문제된 부분을 삭제 정정할 것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國會法과 國會 規定에 의하면 議員들의 發言을 삭제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비밀을 요하거나 國家安全保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가 아니면 또 그러한 경우라도 發言한 議員과 院內總務와 협의해서 삭제하기로 합의하지 않고서는 會議錄을 삭제할 수가 없도록 이와 같이 規定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10月10日 對政府質問때에 지금 司會를 보시는 金在光副議長께서는 그것이 삭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 당시 소란이 있어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까지도 정리가 안되어서 아직까지도 配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이와같은 國會法과 國會 規定을 위반한 議長의 처사에 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公式謝過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朴浚圭議長께서는 지난번 速記錄問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몇 명 안되는 議員들끼리 民主黨할 때에도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 議事進行 發言도 안주고 또 法案에 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反對討論과 表決도 하지 않고 거의 滿場一致로 通過됐다 하는 그러한 참 駭怪罔測한 그러한 議事를 진행한 議長입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이번에 速記錄發刊 配布를 아니하고 있는 이러한 議長의 폭거는 이것은 反議會主義의이고 우리 民主化를 지향하고자 하는 6共 國會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우리 對國民 對國會 경시태도에 다름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議員은 다시 한번 우리 議長께 이번 速記錄未發刊 未配付 또 열람 복사 거부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공식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고 즉각 이것을 發刊 配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在光 지금 張議員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月10日 第6次 本會議 會議錄이

아직 配布되지 못한 이유야 어떻게 議長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議長으로서는 國會運營에 있어서 與野間에 異見이 있는 부분을 가급적 與野總務團에 의해서 協議함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議員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當日 會議內容中에 與野間에 異見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議長은 與野間에 원만한 協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協議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議長은 與野總務들의 協議結果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協議해 주시기를 與野代表議員에게 부탁드립니다.

(場內騷亂)

第14次 本會議는 11月20日 水曜日 午後 2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41分 散會)

○出席議員數 262人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國務總理	鄭元植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副總理兼統一院長官	崔浩中
內務部長官	李相淵
財務部長官	李龍萬
法務部長官	金洪春
教育部長官	尹亨燮
文化部長官	李御寧
動力資源部長官	陳稔稔
建設部長官	李鎮高
保健社會部長官	安弼濬
環境處長官	權赫順
政務長官(第2)	李季

○出席政府委員

外務部次官	柳宗夏
農林水產部次官	李炳浙
交通部次官	張相鉉

【報告事項】

○特別委員長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瑛泰
(11月5日字)

○幹事選任

委員會	委員名	交渉團體
倫理特別	李仁濟	民主自由黨
"	辛基夏	民主黨

(11月4日字)

委員會	委員名	交渉團體
豫算決算特別	洪熙杓	民主自由黨
"	金瑋鎬	民主黨

(11月5日字)

○常任委員變更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渉團體
朴亨午	農林水產	內務	民主黨
金忠兆	內務	農林水產	"
盧武鉉	農林水產	勞動	"
洪起薰	勞動	農林水產	"

(11月6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渉團體
國會運營	許泓 (內務)	李教成 (交通)	民主黨

(11月8日字)

○議案提出

- 1992年度外國換平基金債券發行同意案
- 1992年度國民債券發行同意案
- 1992年度國民住宅基金債券發行同意案
- 1992年度農漁村發展債券發行同意案
- 1992年度農地債券發行同意案
- 1992年度肥料計定の韓國銀行借入元利金償還에 대한 國家保證同意案
(이상 6件 11月4日 政府提出)
이상 6件 11月6日 財務委員會에 回附
- 半導體集積회로의配置設計에 관한法律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商工委員會에 回附
- 消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 京畿道高陽市設置와 江原道春城郡의 명칭 변경에 관한 法律案
(이상 3件 11月8日 政府提出)
이상 3件 11月9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 都市計劃法中改正法律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建設委員會에 回附
- 環境改善促進法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保健社會委員會에 回附
-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案

割賦去來에 관한法律案

(이상 2件 11月8日 政府提出)

이상 2件 11月9日 商工委員會에 回附

教育法中改正法律案

幼兒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 11月8日 政府提出)

이상 2件 11月9日 教育體育青少年委員會에 回附

不動產登記法中改正法律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

骨材採取法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建設委員會에 回附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交通遞信委員會에 回附

消防法改正法律案

(11月8日 政府提出)

11月9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航空法改正法律案

電波管理法中改正法律案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件 11月9日 政府提出)

이상 3件 11月9日 交通遞信委員會에 回附

水道法改正法律案

(11月9日 政府提出)

11月9日 建設委員會에 回附

昇降機製造 및 管理에 관한法律案

(11月9日 政府提出)

11月9日 商工委員會에 回附

에너지利用合理化法改正法律案

(11月9日 政府提出)

11月9日 動力資源委員會에 回附

非訟事件簡次法改正法律案

(11月9日 政府提出)

11月9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

科學館育成法案

(11月9日 政府提出)

11月9日 經濟科學委員會에 回附

休會의件

(11月11日 議長提議)

11月12日 (7日間)
11月19日

○議案審査

各級法院의設置및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月7日 政府提出)

(11月9日 法制司法委員長 金重權 報告)

原案議決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

(10月24日 金濟泰議員外 20人 發議)

(11月9日 法制司法委員長 金重權 報告)

修正議決

警察共濟會法案

(10月25日 金瑾洙議員外 25人 發議)

大韓消防共濟會法案

(10月26日 康祐赫議員外 19人 發議)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10月30日 政府提出)

(이상 3件 11月9日 內務委員長 吳漢九 報告)

이상 3件 原案議決

射倂行爲等規制法中改正法律案

(11月4日 政府提出)

地籍法中改正法律案

(11月28日 政府提出)

(이상 2件 11月9日 內務委員長 吳漢九 報告)

이상 2件 修正議決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案

(9月14日 政府提出)

(11月9日 文化公報委員長 李敏燮 報告)

修正議決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

(9月27日 政府提出)

(11月9日 動力資源委員長 柳漢烈 報告)

原案議決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10月4日 政府提出)

(11月9日 動力資源委員長 柳漢烈 報告)

修正議決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이상 2件 9月2日 政府提出)

(이상 2件 11月9日 豫算決算特別委員

長 金瑤泰 報告)

原案議決

○議案撤回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 1990年12月7日 柳寅鶴·姜金植·金奉旭·林春元·李敬載·許萬基·洪英基議員外 64人 發議)

이상 2件 10月31日 發議者의 要求로 撤回

○請願提出

陸軍航空學校의移轉建立豫定地變更에관한請願

(10月28日 충남논산군노성면읍내리2구 박만식外 1,793人으로부터 金濟泰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旨

1. 地域住民의 生活環境 保護와 地域發展을 위해 陸軍航空學校의 移轉建立豫定地를 變更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政府는 최근 國防部關係者를 통해 陸軍航空學校의 移轉建立을 위해 충남 논산군 노성면 소재 42만평의 敷地를 매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政府發表대로 施行시 예상되는 問題點으로, 첫째, 地域住民의 소음공해로 인해 住居環境과 家畜飼育에 直·間接被害를 받을 것이며, 둘째, 同 地域은 노성면 일원중 장래 發展可能性이 높은 地域으로 政府의 國土의 效率的利用政策에도 어긋나며 셋째, 航空學校移轉敷地가 移轉에 따른 派生問題로 全國 各地域에서 住民의 반대에 부딪쳐 수차 變更되었다가 同 地域으로 낙착된 것은 노성면 地域住民의 自尊心을 도외시하는 것 등이 있는 바 政府는 陸軍航空學校의 建立豫定地를 현재의 노성면지역에서 他地域으로 變更하여 줄 것을 바라는 請願임.

11月6日 國防委員會에 回附

稅法改正에관한請願

(10月28日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으로부터 柳昇珪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旨

1. 우리나라 租稅制度의 後進性 탈피를

위해 租稅制度의 근본적인 改革과 租稅의 衡平性이 실현될 수 있도록 租稅關聯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현행 우리나라 租稅制度는 '88年과 '90年 2次에 걸친 稅制改編 단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減稅爲主의 政策基調가 유지됨으로써,

첫째 근로소득 자산소득 금융소득간 稅負擔의 衡平性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광범위한 租稅減免制度로 인해 課稅베이스가 협소하며

셋째, 稅率이 비정상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넷째 稅收構造가 逆進性을 보이는 등 많은 問題를 안고 있는 바 우리의 經濟發展段階에 걸맞는 租稅制度의 확립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한 租稅關聯法 改正案을 제출하니 租稅關聯法이 同改正案과 같이 改正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첫째 勤勞所得稅의 필요경비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勞動者의 最小限의 生活를 보장하고

둘째 낙후부문에 대한 租稅減免은 94年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일반적인 租稅減免制度는 금년말로 廢止할 것

셋째 만성적인 不動產投機의 근절과 제한된 土地의 效率的 運用을 위해 土地稅制를 강화하고

넷째 所得逆進的인 附加價値稅率을 引下할 것과 아울러 비현실적인 特別消費稅를 조정하고

다섯째 勞動組合의 自主福祉活動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租稅制度의 보완이 되도록 할 것.

11月6日 財務委員會에 回附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

(10月28日 서울시중로구송인동56-38동원빌딩5층 단명호로부터 張石和議員外 1人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勞動分野의 民主化를 이루고 國際的인 勞動秩序에 副應하기 위해 現行勞動關係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勞動運動 關聯團體에서는 勞動分野의

民主化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非民主的인 勞動關係法(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最低賃金法 등)改正을 추진하여 '89年 同法 改正案이 國會에 제출·통과되었으나, 大統領의 拒否權行使로 同法改正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는 政府가 勞動法을 勞動統制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취한 時代逆行的인 조치로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또한 최근 UN會員國 加入으로 조만간 國際勞動機構(ILO)에 加入,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활동해야 할 시점에서 國內의 勞動關係法 整備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바 國內의 勞動關係法을 ILO條約 87호등 國際勞動基準에 맞게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紹介議員: 洪 起 薰

11月6日 勞動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指定無形文化財傳授獎學生交替에 관한 請願

(10月29日 서울시중구신당4동333-307 12동9반 정병호로부터 趙洪奎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傳統文化의 올바른 繼承을 위해 不合理하게 選定된 서울시 지정 無形文化財 第1號 생울칠의 傳授獎學生을 交替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請願人은 현재 서울특별시 지정 無形文化財 保有者(생울칠 기능보유)인 홍순태의 분하에서 35년간 當該 技能을 이수하면서 無形文化財 傳授獎學生으로 選定되길 기대해 왔으나 關係法上 推薦權者인 同 技能保有者가 기능이 越等한 請願人을 제치고 수준이하의 기능을 가진 자를 사적 친분만을 고려 關係機關에 추천하여 同傳授獎學生으로 選定되게 하였는 바 無形文化財 傳授獎學生은 장래 無形文化財 保有者가 되어 傳統文化의 脈을 이어가야 할 者이므로 무엇보다도 技能이 뛰어난 者 중에서 選定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條件을 갖추지 못한 者가 推薦權者의 私的 利害와 關係機關의 無誠意한 審査로 인해 同傳授獎學生으로 選定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조치이므로 서울시는 종전의 資格未達者에 대한 同傳授獎學生 選定處分을 取消하고 資格을 갖춘 請願人을 同傳授獎學生으로 選定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11月8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改正에관한請願

(10月30日 서울시영등포구역의도동 44-15 유재연으로부터 洪熙杓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私立學校 敎職員에 대한 退職手當의 支給에 소요되는 費用을 國家가 부담하도록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현재 國會에 제류중인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은 私立學校敎職員이 退職할 경우 退職給與외에 退職手當을 지급하도록 關係法이 改正됨에 따라 退職手當의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을 學校法人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同案대로 施行될 경우 첫째 私學法人은 敎員에 대한 관계에서 使用者가 아니며(憲法裁判所의 判例) 궁극적으로 國家가 使用者인데 使用者가 아닌 私學法人에 同費用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둘째 私學法人은 추가로 退職手當을 위한 費用負擔을 함으로써 公務員年金法の 적용을 받지 않는 他法人에 비해 2重으로 費用負擔을 하게 되며 셋째 현재의 私立學校는 심각한 財源不足狀態에 직면해 있는데 추가의 費用負擔은 私學이 運營自體를 어렵게 할 것 등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同費用을 현재 學校法人負擔에서 國家負擔으로 되도록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11月8日 教育體育靑少年委員會에 回附

性暴力特別法制定에관한請願

(10月30日 서울시서대문구창천동114-9 김계정으로부터 朴英淑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性暴力의 防止를 위해 單一法으로서

性暴力特別法을 制定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최근 性暴力가 폭발적으로 增加하고 새로운 형태의 性犯罪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被害는 대부분 은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法的 對處가 요구되는데 현행 關係法の 改正 정도로는 性暴力 關係者들의 法認識이나 態度 矯正을 기대할 수 없고 그것조차도 法技術의 不可能(다른 法原理에 의해 산재해 있는 關係法條項을 一貫性있게 추가·삭제·보완하는 것)하여 위 실태의 改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하나의 法原理에 의해 實體 節次 行刑 保安處分 被害者救濟 등이 綜合的으로 規定되는 단일한 法으로서 性暴力特別法을 制定하여 주고 그 내용에 請願人이 提示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11月8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

自動車運輸事業法改正에관한請願

(11月2日 경남마산시합성동 158-12 조옥환外 8人으로부터 金 楠議員外 8人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自家用自動車の 不法營業行爲 根絶을 위해 自動車運輸事業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최근 自家用自動車の 不法的인 營業行爲가 성행함으로써 法秩序가 파괴되고 合法的인 運輸事業者가 피해를 입어 自動車運輸業의 經營難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많은 不法營業 自家用自動車が 自動車保險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交通事故時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補償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원인은 自家用自動車の 不法營業行爲에 대해 경미한 處罰이나 制限을 規定하고 있는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있는 것인 바 自家用自動車の 不法營業行爲 根絶을 위해 同行爲에 대해 罰則을 強化하거나 自動車登錄을 抹消시키도록 自動車運輸事業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紹介議員

安乘珪 白璩基 金奉祚
曹萬厚 鄭順德 金東周
黃性均 鄭東鎬

11月8日 交通通信委員會 回附